석관동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서울특별시는 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개발과 – 11770(2008.10.06)호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8–540번지 일대**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상9층~15층 5개동 19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아파트 일반공급 56세대(성북구 석관 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급세대 중 일반공급분) (일반 특별공급 3세대, 3자녀 특별공급 1세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3세대 총7세대 포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세대별 계약 면적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층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주택	22069–01	2008000848(01)	81.98	59.95	22.03	81.98	37.64(33.72)	119.62	40.55	5	2~4
	22069–02	2008000848(02)	81.76	59.93	21.83	81.76	37.63(33.71)	119.39	40.44	6	2~5
	22069–03	2008000848(03)	110.06	84.91	25.15	110.06	53.31(47.76)	163.37	54.44	11	1~3, 15
	22069–04	2008000848(04)	109.95	84.80	25.15	109.95	53.24(47.70)	163.19	54.39	8	1~3, 14
	22069–05	2008000848(05)	114.19	84.88	29.31	114.19	53.30(47.75)	167.49	56.49	6	2~4
	22069–06	2008000848(06)	150.75	115.47	35.28	150.75	72.50(64.95)	223.25	74.57	9	2~6
	22069–07	2008000848(07)	150.30	115.43	34.87	150.30	72.48(64.93)	222.78	74.35	11	1~6

주택형	층별	공급세대수	분양 금액			계약금	중 도 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분양금액	계약시	1차 09. 01. 15	2차 09. 05. 15	3차 09. 09. 15	4차 10. 01. 15	5차 10. 05. 17	6차 10. 09. 15	입주지정일
81.98	2층	1	146,574	159,426	306,000	30,600	30,600	30,600	30,600	30,600	30,600	30,600	91,800
	3층	2	149,448	162,552	312,0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93,600
	기준층	2	155,675	169,325	325,000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97,500
81.76	2층	1	146,574	159,426	306,000	30,600	30,600	30,600	30,600	30,600	30,600	30,600	91,800
	3층	2	149,448	162,552	312,0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93,600
	기준층	3	155,675	169,325	325,000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32,500	97,500
110.06	1층	2	194,953	212,047	407,000	40,700	40,700	40,700	40,700	40,700	40,700	40,700	122,100
	2층	3	203,575	221,425	425,000	42,500	42,500	42,500	42,500	42,500	42,500	42,500	127,500
	3층	4	207,886	226,114	434,000	43,400	43,400	43,400	43,400	43,400	43,400	43,400	130,200
	기준층	2	216,508	235,492	452,000	45,200	45,200	45,200	45,200	45,200	45,200	45,200	135,600
109.95	1층	1	194,953	212,047	407,000	40,700	40,700	40,700	40,700	40,700	40,700	40,700	122,100
	2층	2	203,575	221,425	425,000	42,500	42,500	42,500	42,500	42,500	42,500	42,500	127,500
	3층	3	207,886	226,114	434,000	43,400	43,400	43,400	43,400	43,400	43,400	43,400	130,200
	기준층	2	216,508	235,492	452,000	45,200	45,200	45,200	45,200	45,200	45,200	45,200	135,600
114.19	2층	2	203,575	221,425	425,000	42,500	42,500	42,500	42,500	42,500	42,500	42,500	127,500
	3층	2	207,886	226,114	434,000	43,400	43,400	43,400	43,400	43,400	43,400	43,400	130,200
	기준층	2	216,508	235,492	452,000	45,200	45,200	45,200	45,200	45,200	45,200	45,200	135,600
150.75	2층	1	296,980	323,020	620,000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186,000
	3층	2	303,207	329,793	633,000	63,300	63,300	63,300	63,300	63,300	63,300	63,300	189,900
	기준층	6	315,661	343,339	659,000	65,900	65,900	65,900	65,900	65,900	65,900	65,900	197,700
150.30	1층	2	286,442	311,558	598,000	59,800	59,800	59,800	59,800	59,800	59,800	59,800	179,400
	2층	2	296,980	323,020	620,000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62,000	186,000
	3층	2	303,207	329,793	633,000	63,300	63,300	63,300	63,300	63,300	63,300	63,300	189,900
	기준층	5	315,661	343,339	659,000	65,900	65,900	65,900	65,900	65,900	65,900	65,900	197,700

• 상기 공급금액의 명칭은 공사비용은 사업비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3 9)가)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의하여 적의 조정되어 책정된 금액이며,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포함되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정부가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임.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선하는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층 · 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시장에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청약자)의 착오 및 기재오류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권리배제,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시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은 신청형별로 일반 공급으로 전환됨.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상시 공사비가 제외되어 있음. • 친공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하며, 다만, 대지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한 동별 사용승인 등을 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에 준하여 친금의 일부(10%)의 납부를 유보하고, 전체건물 및 토지 준공인가를 받은 후 완납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래와 같은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대비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회로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사정 이후 납부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사용특별시 성북구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2006. 11. 24)되어, 일부아파트(84㎡이하)는 주택법(분양가상한제)의 적용됨 • 당 아파트는 2007. 9. 1.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기정제도가 적용됨 • 사용특별시 성북구는 2002. 9. 6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전매 제한 규정개약체결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금지이 적용되며, 청약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주택 이상을 소유한 분양자가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 포함)은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로 청약 가능(되며,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2.9.5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로 청약 가능)됨

▣ 발코니 확장 공사비

주택형	확장위치	확장공사비	미확장부위 샷시(단창)
81.98	거실, 침실1, 침실2, 주방	8,726,000원	2,479,000원
81.76	거실, 침실1, 침실2, 주방	8,726,000원	2,479,000원
110.06	거실, 침실1, 침실2, 주방	9,864,000원	3,127,000원
109.95	거실, 침실1, 침실2, 주방	9,864,000원	3,127,000원
114.19	거실, 침실1, 침실2, 주방	9,864,000원	3,127,000원
150.75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12,941,000원	4,426,000원
150.30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주방	12,941,000원	4,426,000원

• 발코니 확장 공사는 필수사항이 아님(입주자 개인의 선택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임) • 발코니 확장 비용은 주택가격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 항목의 미설치 감소 비용과 추가설치 항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평형별 전체 확장공사 세대에 한하여 안방 발코니 샷시를 무상으로 시공하며, 이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세대는 미확장부위인방 발코니 샷시 포함)샷시 공사비는 별도임. •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샷셜 선택시 미확장부위는 단창 샷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선택가능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특별공급 일정

면적구분(전용면적)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청약접수 장소/시간	추첨 및 당첨자 발표
전 주택형	각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비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008. 10. 13	당사 분양사무소 / 10:00 ~ 14:00	2008. 10. 13 / 당사 분양사무소 / 15:00

– 특별공급 세대수

구분	거주지별	81.98	81.76	110.06	109.95	114.19	150.75	150.30	계
일반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1	1				3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1						1
	경기도								0
	인천광역시								0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2						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3자녀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50%는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8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 40%, 인천광역시 거주자 10%에게 각각 공급함.

1)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대 상 자 : 대상자중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공급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범위이내로 총 34세대

2)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세대주로 한정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포함되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정부가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임.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선하는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층 · 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시장에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청약자)의 착오 및 기재오류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권리배제,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시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은 신청형별로 일반 공급으로 전환됨.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상시 공사비가 제외되어 있음. • 친공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하며, 다만, 대지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한 동별 사용승인 등을 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에 준하여 친금의 일부(10%)의 납부를 유보하고, 전체건물 및 토지 준공인가를 받은 후 완납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래와 같은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대비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회로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사정 이후 납부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사용특별시 성북구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2006. 11. 24)되어, 일부아파트(84㎡이하)는 주택법(분양가상한제)의 적용됨 • 당 아파트는 2007. 9. 1.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기정제도가 적용됨 • 사용특별시 성북구는 2002. 9. 6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전매 제한 규정개약체결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금지이 적용되며, 청약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주택 이상을 소유한 분양자가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 포함)은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로 청약 가능)되며,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2.9.5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로 청약 가능)됨

– 특별공급 세대수

구분	거주지별	81.98	81.76	110.06	109.95	114.19	150.75	150.30	계
일반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1	1				3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1						1
	경기도								0
	인천광역시								0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2						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3자녀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50%는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8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 40%, 인천광역시 거주자 10%에게 각각 공급함.

1)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대 상 자 : 대상자중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공급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범위이내로 총 34세대

2)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세대주로 한정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포함되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정부가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임.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선하는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층 · 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시장에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청약자)의 착오 및 기재오류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권리배제,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시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은 신청형별로 일반 공급으로 전환됨.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 및 상시 공사비가 제외되어 있음. • 친공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하며, 다만, 대지의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한 동별 사용승인 등을 한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에 준하여 친금의 일부(10%)의 납부를 유보하고, 전체건물 및 토지 준공인가를 받은 후 완납함.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래와 같은 경우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대비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회로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사정 이후 납부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사용특별시 성북구는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2006. 11. 24)되어, 일부아파트(84㎡이하)는 주택법(분양가상한제)의 적용됨 • 당 아파트는 2007. 9. 1.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기정제도가 적용됨 • 사용특별시 성북구는 2002. 9. 6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전매 제한 규정개약체결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금지이 적용되며, 청약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주택 이상을 소유한 분양자가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 포함)은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로 청약 가능)되며,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2.9.5 이후 청약예금부금) 가입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2순위로 청약 가능)됨

▣ 1순위 청약제한 대상

– 과거 5년 이내 당첨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 (2002. 9. 5. 가입자 포함)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사항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주택청약 청약신청기한 이후 2년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자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2) 94.8.150)전 청약자축에서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지역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1) 주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2)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3) 청약자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